춘천문화원 민속예술단 운영 규칙

제정 2024. 7. 30. (규칙 제11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춘천문화원 민속예술단(이하 "예술단"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 발굴 및 전승, 민속예술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예술단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류) 예술단은 농악, 소리, 판소리, 무용, 미래전승의 분과(이하 “분과”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예술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및 전승

2. 무형유산 등재 및 가치 확산

3. 각종 공연과 경연대회 참가를 통한 춘천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 홍보

제4조(조직) ① 예술단은 분과장, 전승강사를 포함하여 1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예술단 분과별 단원의 정원은 [별표 1]과 같다.

제5조(단장)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의 운영을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춘천문화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6조(분과장) ①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고 각 분과의 운영을 책임진다.

② 분과장은 각 분과의 분야별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다.

③ 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단원의 위촉) ① 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국내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모집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② 공개모집은 서류전형 및 실기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, 특별모집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.

③ 단원은 문화원 회원이어야 하며, 단원마다 하나의 분과에만 소속된다. 단, 분과장 각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분과에 소속될 수 있다.

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촉기간이 끝난 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(단원의 해촉)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1.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

2. 예술단의 규칙 및 결정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
3. 예술단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선동하는 경우

4. 예술단 연습 및 공연 등 예술단 활동 참여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기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

5. 본인이 예술단 탈퇴를 원하는 경우

6. 기타 단원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단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간 단원으로 재위촉될 수 없다.

제9조(단원의 의무) ① 분과장 및 전승강사는 예술단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원의 기량 향상과 최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② 단원은 분과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연습을 해야 하며, 연 1회 이상 공연 또는 경연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.

③ 단원은 문화원의 제반 방침과 예술단 운영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분과장 및 전승강사의 지도에 충실히 따를 의무를 진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 설치) ① 예술단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춘천문화원 민속예술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단장과 분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
1. 문화·예술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전문가

2. 예술단체의 대표 또는 단장(급)

④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.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예술단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2.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3. 단원의 위·해촉에 관한 사항

4. 단원의 재위촉 심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2조(운영위원회 소집)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평정) ① 단원의 기량 관리와 체계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단원을 대상으로 평정을 실시한다.

② 전항의 단원 평정은 제7조 제4항에 의한 임기 만료 후 실시한다.

③ 평정의 세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4조(포상 및 징계) ① 단원 중 예술단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
② 단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
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결정한다.

제15조(수당)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｢춘천문화원 사업 집행을 위한 단가 지침｣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지침)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 (2024. 7. 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 조치) 이 규칙 시행 전 위촉된 분과장 및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분과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칙 시행 전 위촉된 분과장과 단원에 대하여는 2024. 1. 1.을 임기 시작일로 본다.

|  |
| --- |
| ■ 춘천문화원 민속예술단 운영 규칙 [별표 1] |
|  |
| 민속예술단 분과별 정원 (제4조 관련) |

|  |  |
| --- | --- |
| 분과명 | 정 원 |
| 농악 | 45명 |
| 소리 | 20명 |
| 판소리 | 20명 |
| 무용 | 15명 |
| 미래전승 | 20명 |